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1623호 2013. 1. 23. 공포, 2022. 3. 1. 시행)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신설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2개 형사부와 3개 과를 신설하고,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1개 형사부를 폐지하며, 정원 1명(5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4급 1명)하는 한편,

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수원지방법검찰청의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1개 형사부를 각각 신설하고,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(9급 3명)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00. ~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 중 “408명”을 “405명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9제1항 중 “형사제5부·형사제6부 및 공판송무부”를 “형사제5부 및 공판송무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형사제3부장·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”을 “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”으로, “형사제6부장”을 “형사제5부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10제1항 중 “의정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6부”를 “의정부지방법검찰청 형사제5부”로 한다.

제16조의11제1항 중 “형사제3부 및 공판부”를 “형사제3부·형사제4부 및 공판부”로, “안양지청”을 “안양지청,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”으로, “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, 춘천지방법검찰청 원주지청”을 “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, 춘천지방법검찰청 원주지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정부지방법검찰청”을 “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, 의정부지방법검찰청”으로, “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,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”을 “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,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”으로, “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, 춘천지방법검찰청 원주지청”을 “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, 춘천지방법

찰청 원주지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지청 중”을 “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,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검찰수사서기관 “111”을 “112”로, 검찰사무관 “406”을 “405”로,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“23”을 “26”으로, 전기운영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, 열관리운영서기보 “12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6항·제16조의9제1항·제4항, 제16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, 제16조의11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신설과 관련된 개정사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 중 검찰수사서기관 “112”를 “111”로, 검찰사무관 “405”를 “406”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공무원의 정원) ① ~ ⑤ (생 략)	제2조(공무원의 정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 서기관·검찰사무관 또는 마약 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 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「검 찰청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방검 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 의 정원으로 본다.	⑥----- ----- ----- ----- 405명 ----- ----- ----- -----.
⑦·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 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·형 사제4부·형사제5부·형사제6 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사이 버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두 고,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 제1부·형사제2부·형사제3부 ·형사제4부·형사제5부·조세 범죄형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 부 및 공판부를 두며,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·형사	제16조의9(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2부 · 형사제3부 · 형사제4부
· 형사제5부 · 식품의약품범죄형
사부 ·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
공판부를 두고, 의정부지방검찰
청에 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 ·
형사제3부 · 형사제4부 · 형사제
5부 · 형사제6부 및 공판송무부
를 두며, 청주지방검찰청, 전주
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
에 각각 형사제1부 · 형사제2부
및 형사제3부를 두고, 춘천지방
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
부를 둔다.

② · ③ (생략)

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· 형사제2부장 · 형사제3부장 ·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, 제4항,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,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,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.

⑤ ~ ⑩ (생략)

제16조의10(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)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,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,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,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,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,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6조의11(수원지방검찰청 안산

제16조의10(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) ① -----

-----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11(수원지방검찰청 안산

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
 무)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
 청에 형사제1부·형사제2부·
형사제3부 및 공판부를 두고,
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, 인
 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, 수원지
 방검찰청 성남지청, 수원지방검
 찰청 안양지청, 대구지방검찰청
 서부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동부
 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
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
 각각 형사제1부·형사제2부 및
 형사제3부를 두며, 수원지방검
찰청 평택지청, 춘천지방검찰청
원주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
 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
 청,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,
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시청, 창원
 지방검찰청 통영지청, 광주지방
 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
 찰청 군산시청에 각각 형사제1
 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, 수원
 지방검찰청 여주시청, 춘천지방
 검찰청 강릉지청, 대전지방검찰
 청 홍성지청, 대전지방검찰청
 서산지청, 청주지방검찰청 충주

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
 무) ① -----

형사제3부·형사제4부 및 공판
부-----

 -- 안양지청, 수원지방검찰청
평택지청-----

 ----- 의정부지방검
찰청 남양주시청, 춘천지방검찰
청 원주지청-----

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
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
각각 형사부를 둔다.

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,
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, 수원
지방검찰청 성남지청, 수원지방
검찰청 안산지청, 수원지방검찰
청 안양지청, 대구지방검찰청
서부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동부
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
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
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 및
형사제3부장, 수원지방검찰청
평택지청, 춘천지방검찰청 원주
지청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
청,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,
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, 창원
지방검찰청 진주시청, 창원지방
검찰청 통영지청, 광주지방검찰
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
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
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
항을 분장하며, 각 부장 간의 사
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8조(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

-----.

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
형사제1부장·형사제2부장·형
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, 의
정부지방검찰청 --- 수원지방
검찰청 안양지청, 수원지방검찰
청 평택지청-----

----- 의정부지방검찰청
남양주시청, 춘천지방검찰청 원
주지청---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

②제1항의 지청 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,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,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,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·평택지청,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·원주지청,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·서산지청,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·경주지청·김천지청,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·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,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,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·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.

[illegible]

[별표 2]

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(지청 포함)

(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검찰수사서기관	<u>111</u>	<u>11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검찰사무관	<u>406</u>	<u>405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	<u>23</u>	<u>26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전기운영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열관리운영서기보	<u>12</u>	<u>10</u>	-2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